

## 오산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

제정 1989년 1월 1일 규칙 제 19호

개정 2011년 1월 10일 규칙 제682호

(제명개정 포함)

일부개정 2017년 6월 12일 규칙 제809호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제8조에 따라 시에 배치한 청원경찰(이하 “청원경찰”이라 한다)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1. 1. 10>

**제2조(징계의 관할)**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오산시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.

**제3조(징계의 종류)** 징계의 종류는 파면, 해임, 정직, 감봉, 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. <개정 2011. 1. 10>

**제4조(징계처분)**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며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 한다. <개정 2011. 1. 10>

1. 청원경찰법 및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
2.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
3.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

**제5조(준용규정)**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「지방공무원 징계규칙」을 준용한다. <개정 2011. 1. 10, 2017. 6. 12>

### 부칙

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2011. 1. 10 규칙 제682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2017. 6. 12 규칙 제809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